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3권 33~33p 경비업법 시행령 제24조 관련 [별표 4] 제1호 일반기준 나목	오타	나.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, 2.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(이하 생략)	나.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르며,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(이하 생략)
2권 288~288p (2) 비밀경호국의 경호 특징	문제-본문	(2) 비밀경호국의 경호 특징 ① 1선, 2선, 3선 등의 3중 경호 원칙 ㉠ 제1선(수행 경호) : 권총 유효 사정거리 및 수류탄 등 폭발물 투척거리를 고려한 50m 이내의 반경으로, 사주경계 및 피경호원을 중심으로 인간방호벽을 구축하며, 인가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. ㉡ 제2선(근접 경호) : 피경호원 50m 외곽 경계 및 소총 유효 사정거리를 고려할 1,000m 이내의 반경으로, 사주경계 및 불심검문·검색과 피경호원의 접근 가능한 통로를 통제하며, 통로 통제 시 방호벽을 설치하고, 중요지점에 요원 배치가 원칙이다. ㉢ 제3선(외곽 경호) : 1,000m 반경 이상 소구경 곡사화기 공격 대응을 맡으며, 행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거하고, 외곽 경계 및 연도 경호 경비를 한다.	(2) 비밀경호국의 경호 특징 ① 1선, 2선, 3선 등의 3중 경호 원칙 ㉠ 제1선(수행 경호) : 권총 유효 사정거리 및 수류탄 등 폭발물 투척거리를 고려한 50m 이내의 반경으로, 사주경계 및 피경호원을 중심으로 인간방호벽을 구축하며, 인가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. ㉡ 제2선(근접 경호) : 피경호원 50m 외곽 경계 및 소총 유효 사정거리를 고려할 600m 이내의 반경으로, 사주경계 및 불심검문·검색과 피경호원의 접근 가능한 통로를 통제하며, 통로 통제 시 방호벽을 설치하고, 중요지점에 요원 배치가 원칙이다. ㉢ 제3선(외곽 경호) : 600m 반경 이상 소구경 곡사화기 공격 대응을 맡으며, 행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제거하고, 외곽 경계 및 연도 경호 경비를 한다.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